

제280회 강서구의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1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6월 15일
전문위원 서 선 옥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63
- 나. 제 출 자: 송순호 의원 외 7명
- 다. 제출일자: 2021년 5월 26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2.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금주구역 지정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금주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관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사. 음주폐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아. 민간 참여 유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자. 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차. 시행규칙에 대하여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8조, 제8조의4

나. 예산조치: 2021년 본예산 편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다. 해당부서: 의약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1. 5. 27. ~ 6. 1.)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강서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 용어 정의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구민에게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알리

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음.

- 안 제4조는 금주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의 위임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주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도록 함.

※ 금주구역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안 제5조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것으로
 - 강서구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함.
- 안 제6조는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에 대해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는 구민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사업
 -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시행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는 민간의 참여유도에 관한 사항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의 관련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

기업 등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음.

- 안 제9조는 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은 2021년 6월 30일부터로 하였음.
- 우리나라의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한해 4,747명으로 매일 1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¹⁾되었으며,
- 주취폭력, 자살 등 주요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사회 안전의 위협이 되고,
 -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액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9조 4천억원²⁾에 달함.
-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피해의 경험³⁾이 많으며, 이로 인해 공공장소의 음주 제한에 대한 많은 요청이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주요 실행과제로 공공기관, 아동·청소년 시설에 대한 금주구역 지정 및 광고 환경 변화를 반영한 주류광고 규제 강화 등이 논의되었으며,
-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통과되었음.
- 공포 후 6개월인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의 법적근거를

1) 출처: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2018.11.)

2) '15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3) 93.2%가 타인의 음주로 피해를 받았다고 인식하였으며, 66.7%가 폭력행사로 두려움을 경험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하여 과태료(1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그 밖에도 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 등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임.

○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금주 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성이 있으며,

- 조례의 시행일 역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이 발효되는 6월 30일로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 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20. 12. 29.>

⑤ 삭제 <2002. 1. 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 19., 2007. 12. 14.,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 2021. 6. 30.] 제8조의4